

## 경제 및 고용 동향

### ◆ 2013년 12월 생산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.2%, 전월 대비 0.1% 증가

○ 2013년 12월 생산은 공공행정,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1.2% 증가함.

－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(-24.9%), 기타운송장비(-12.4%), 석유정제(-5.3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(6.8%), 기계장비(9.5%), 반도체 및 부품(4.0%) 등에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2.7%(전월대비 3.5% 증가) 증가함.

－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(-2.1%), 금융·보험(-1.2%), 숙박·음식점(-0.5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·사회복지(9.2%), 협회·수리·개인 기타서비스(9.5%) 등에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1.1%(전월대비 0.7% 감소) 증가함.

○ 2013년 12월 소비와 투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0.2%, 2.9% 증가함.

－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, 통신기기 등 내구재(-4.2%)는 감소하였으나 차량연료,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2.6%)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.2%(전월대비 1.3% 감소) 증가함.

－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, 자동차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0.4%(전월대비 5.2% 증가) 증가함.

－ 건설기성(불변)은 건축공사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.1%(전월대비 7.4% 감소) 증가하였고, 건설수주(경상)는 도로·교량, 철도 등에서 부진하였으나

주택, 공장, 관공서, 토지조성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.8% 증가함.

- 2013년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5p 상승함.
  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은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,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.1p 상승함.
  -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, 수출입물가비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,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.5p 상승함.
- 2013년 생산, 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1.3% 0.7% 증가한 반면 투자는 5.0% 감소
  - 2013년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늘어 전년대비 1.3% 증가함.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,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,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년대비 0.1% 감소함.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·사회복지, 협회·수리·개인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등에서 늘어 전년대비 1.3% 증가함.
  - 2014년 소비는 신발·가방 등 준내구재,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,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대비 0.7% 증가한 반면,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,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5.0% 감소함.

◆ 201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(생활물가지수 0.6% 상승)

- 201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50(2010년=100)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.5% 상승,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하여 지난달(1.1%)에 비해 변동 없음.
  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(-1.8%), 교통(-0.1%), 통신(-0.2%) 부문은 하락하였고, 의류 및 신발(4.2%), 주택·수도·전기 및 연료(3.7%)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(1.7%), 음식 및 숙박(1.5%), 오락 및 문화(0.9%)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.
  - 2014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7.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.8%, 전년동월대비 0.6% 상승함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: %, 전년대비,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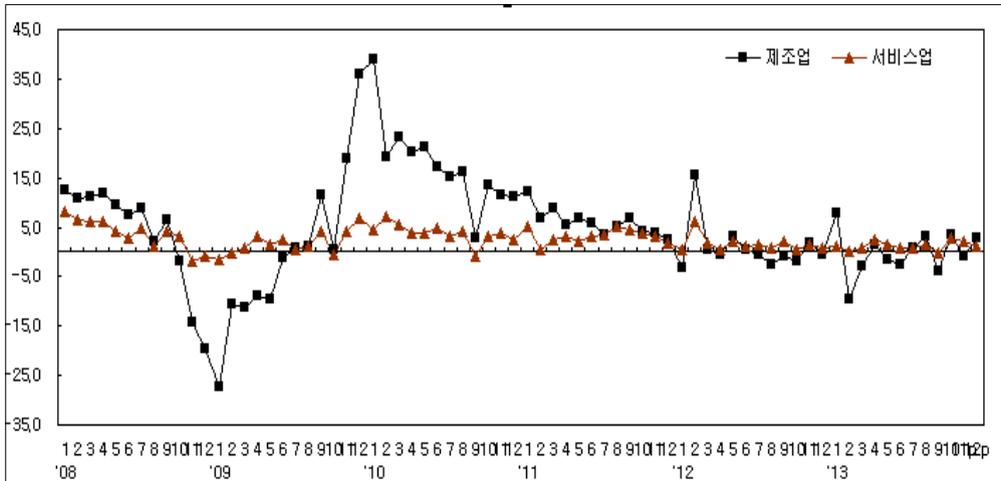
		2011					2012					2013 <sup>o</sup>						
	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2월	1/4	2/4	3/4	4/4 <sup>p</sup>	연간 <sup>p</sup>	12월 <sup>p</sup>
생산	광공업 생산	10.4	7.2	5.3	5.0	6.9	3.8	1.5	0.4	1.1	1.7	-0.4	-1.7	-0.7	0.0	1.8	-0.1	2.6( 3.4)
	제조업 생산	10.6	7.4	5.1	5.3	7.0	4.2	1.5	0.3	1.2	1.8	-0.5	-1.8	-0.8	0.0	1.7	-0.2	2.7( 3.5)
	출하	11.9	7.2	4.9	3.5	6.7	3.3	1.5	0.4	-0.1	1.3	-1.5	-2.3	-1.0	-0.2	1.9	-0.4	2.37( 3.2)
	내수	6.8	3.8	2.7	0.2	3.3	0.3	-1.3	-1.5	-1.9	-1.1	-3.1	-2.8	-1.2	-0.4	2.7	-0.5	3.3( 2.9)
	수출	18.1	11.6	7.7	7.2	10.8	6.7	4.9	2.3	1.8	3.9	0.7	-1.7	-0.6	0.1	0.9	-0.4	1.1( 3.6)
	서비스업생산	2.8	3.3	4.5	2.7	3.3	2.5	1.7	1.6	1.3	1.7	0.7	0.8	1.7	0.7	2.0	1.3	1.1(-0.7)
소비	소비재 판매	5.4	5.7	4.7	1.9	4.3	2.0	1.0	1.7	2.5	1.8	2.0	0.2	1.1	0.7	1.0	0.7	0.2(-1.3)
투자	설비투자	5.4	4.8	-3.1	-4.7	0.7	9.4	-0.4	-7.1	-5.6	-1.1	-6.3	-15.4	-10.0	-4.7	11.9	-5.0	10.4( 5.2)
물가		4.8	4.2	4.8	4.0	4.0	3.0	2.4	1.6	1.7	2.2	1.4	1.6	1.2	1.4	1.1	1.3	1.1( 0.5)

- 주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C), 제조업(D), 전기·가스업(E, F)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.
-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9차 개정, 2007. 12. 28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 및 임대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(N), 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O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S),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)를 포괄하며, 이 중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.
- 3) 물가상승률은 2014년 1월 기준임.
- 4) p는 잠정치임.

자료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〈그림 1〉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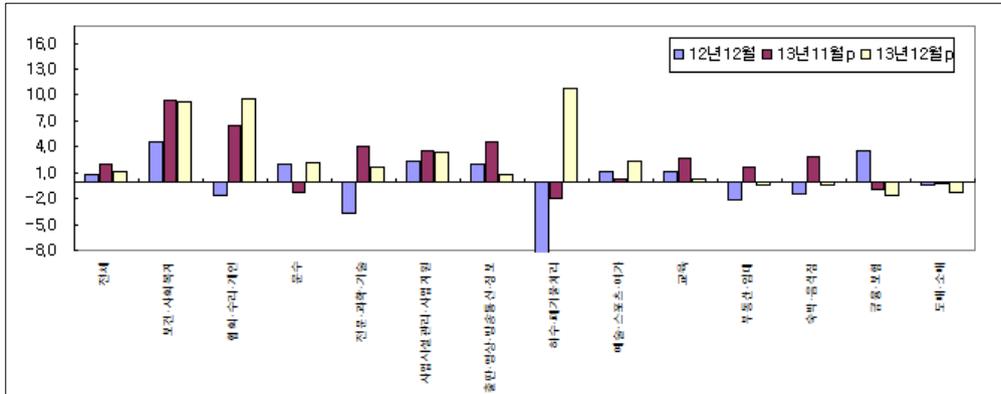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전년동월대비)



주: p는 잠정치임.  
 자료: 통계청(2014.1), 『201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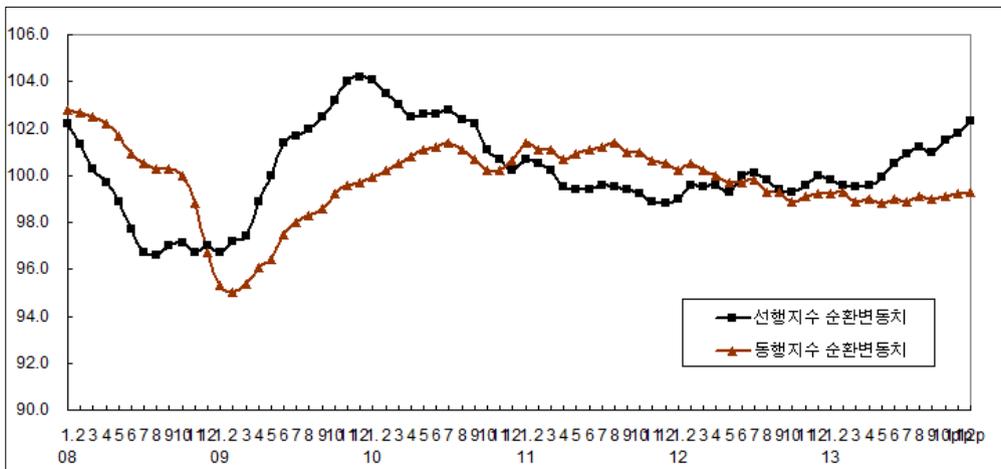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
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

주 : p는 잠정치임.  
자료 : 통계청, KOSIS.

[그림 3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(2010 = 100)



주 : p는 잠정치임.  
자료 : 통계청, KOSIS.

(김복순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

◆ 취업자 증가 확대

- 2014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,6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9천 명(3.0%) 증가함.
  -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,049천 명으로 383천 명(2.6%) 증가하였고, 여성은 10,601천 명으로 366천 명(3.6%) 증가하였음.

- 2014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0.6%로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하였음.
  - 성별로 보면 남성(72.7%)은 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, 여성(49.0%)은 전년동월대비 1.2% 상승함 (그림 4 좌측 참조).
- 2014년 1월 중 고용률은 58.5%로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함.
  - 남성의 고용률은 70.2%, 여성의 고용률은 47.3%로 둘 다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하였음(그림 4 우측 참조).
- 2014년 1월 중 취업자는 24,7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5천 명(2.9%) 증가함.
  - 성별로 보면, 남성 취업자는 14,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1천 명(2.7%) 증가하였고, 여성 취업자는 10,2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4천 명(3.3%) 증가하였음 (그림 5 참조).
- 2014년 1월 중 실업자는 8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(-5.2%) 증가하였으며, 실업률은 3.5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상승하였음.
  - 남성 실업자는 5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(0.5%) 증가, 여성 실업자는 3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(12.9%) 증가하였음.
  - 실업률은 남성이 3.5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하락하였으며, 여성은 3.4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상승하였음.

〈표 2〉 최근의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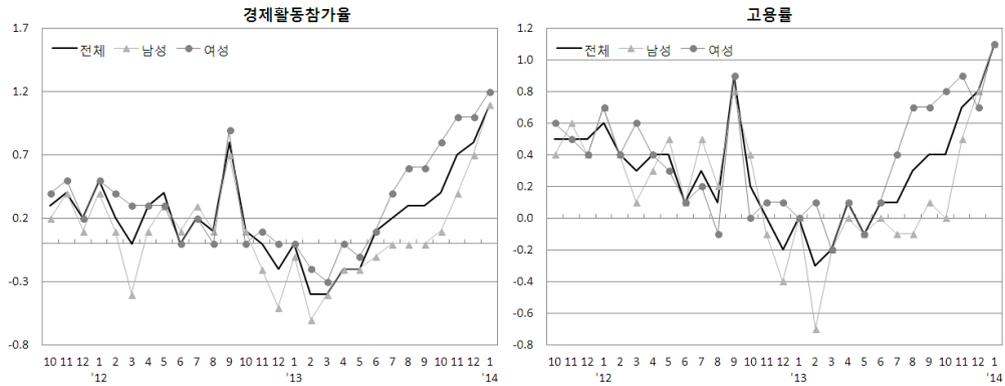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, %)

	2012	2013						2014
	4/4분기	1/4분기					12월	1/4분기
			1월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
경제활동인구	25,526 ( 1.3)	25,091 ( 0.9)	24,901 ( 1.3)	26,138 ( 1.1)	26,187 ( 1.7)	26,078 ( 2.2)	25,736 ( 2.4)	25,650 ( 3.0)
참가율	61.1	59.9	59.5	62.2	62.1	61.7	60.9	60.6
취업자	24,804 ( 1.4)	24,184 ( 1.1)	24,054 ( 1.4)	25,326 ( 1.3)	25,410 ( 1.7)	25,346 ( 2.2)	24,962 ( 2.3)	24,759 ( 2.9)
고용률	59.4	57.7	57.4	60.2	60.3	60.0	59.1	58.5
실업자	722	907	847	812	777	733	774	891
실업률	2.8	3.6	3.4	3.1	3.0	2.8	3.0	3.5
비경제활동인구	16,258 ( 1.5)	16,831 ( 2.0)	16,975 ( 1.4)	15,911 ( 1.5)	15,982 ( 0.5)	16,167 (-0.6)	16,537 (-1.0)	16,654 (-1.9)

주 :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 고용률 = 취업자 / 생산가능인구\*100  
 자료 : 통계청(2014. 2), 『2014년 1월 고용동향』.

[그림 4] 성별 경제활동참가율(좌)과 고용률(우) 증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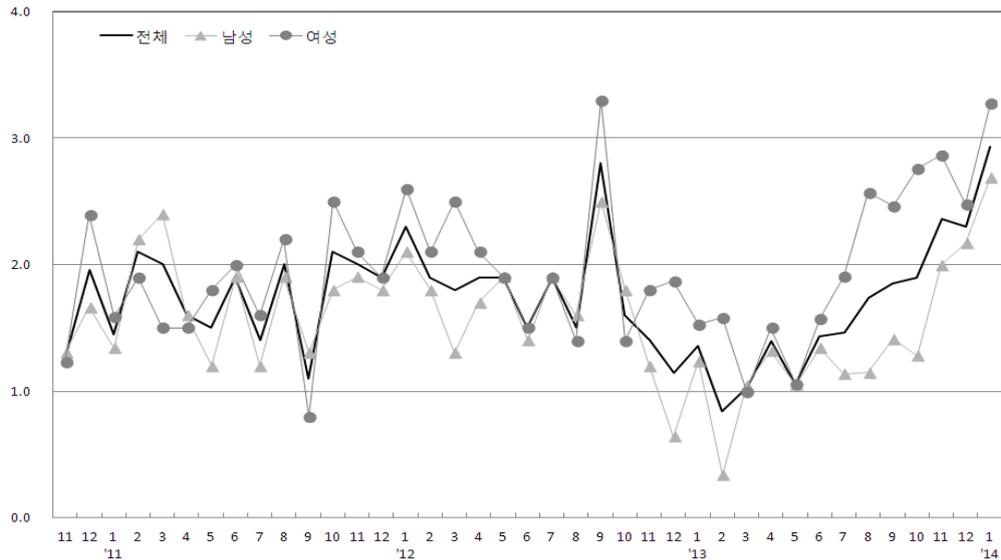
(단위: %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KOSIS.

[그림 5] 성별 취업자 증가율

(단위: %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KOSIS.

○ 2014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,6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2천 명(-1.9%) 감소함.

-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,6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8천 명(-2.9%) 감소하였고,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,0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(-1.4%) 감소하였음.

-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함.
-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'쉬었음'은 1,6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(-8.4%) 감소하였으며, 정규교육기관 재학, 입시학원, 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'재학·수강'은 4,196천 명으로 72천 명(-1.7%) 감소함.

◆ **도소매·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전반적 취업자 증가**

○ 2014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246천 명, 4.4%), 농림어업(47천 명, 4.5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232천 명, 2.7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71천 명, 2.4%), 제조업(90천 명, 2.2%)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자가 증가하였음.

〈표 3〉 산업별 취업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, %)

	2012	2013						2014
	4/4분기	1/4분기	1월			4/4분기	12월	1/4분기
			1월	2/4분기	3/4분기			
전 산업	24,804 ( 1.4)	24,184 ( 1.1)	24,054 ( 1.4)	25,326 ( 1.3)	25,410 ( 1.7)	25,346 ( 2.2)	24,962 ( 2.3)	24,759 ( 2.9)
농림어업	1,518 (-0.2)	1,167 (-0.7)	1,040 (-1.4)	1,686 (-1.6)	1,724 ( 1.1)	1,504 (-1.0)	1,167 (-2.3)	1,086 ( 4.5)
제조업	4,196 ( 3.5)	4,156 ( 3.0)	4,189 ( 3.9)	4,182 ( 3.0)	4,152 ( 0.6)	4,245 ( 1.2)	4,264 ( 2.0)	4,280 ( 2.2)
건설업	1,792 (-2.2)	1,656 (-3.7)	1,671 (-2.8)	1,801 (-0.4)	1,775 ( 0.2)	1,783 (-0.5)	1,755 ( 0.3)	1,688 ( 1.1)
도소매 및 음식·숙박업	5,603 ( 1.1)	5,534 (-0.7)	5,610 (-0.1)	5,585 (-0.2)	5,652 ( 0.7)	5,751 ( 2.6)	5,799 ( 3.6)	5,855 ( 4.4)
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	8,682 ( 2.3)	8,656 ( 3.1)	8,534 ( 2.9)	8,974 ( 1.7)	8,990 ( 2.5)	8,994 ( 3.6)	8,894 ( 2.7)	8,766 ( 2.7)
전기·운수·통신 및 금융업	2,998 (-0.4)	2,999 (-0.4)	2,996 (-0.3)	3,082 ( 3.1)	3,102 ( 3.8)	3,054 ( 1.9)	3,067 ( 2.2)	3,067 ( 2.4)

주 : 1)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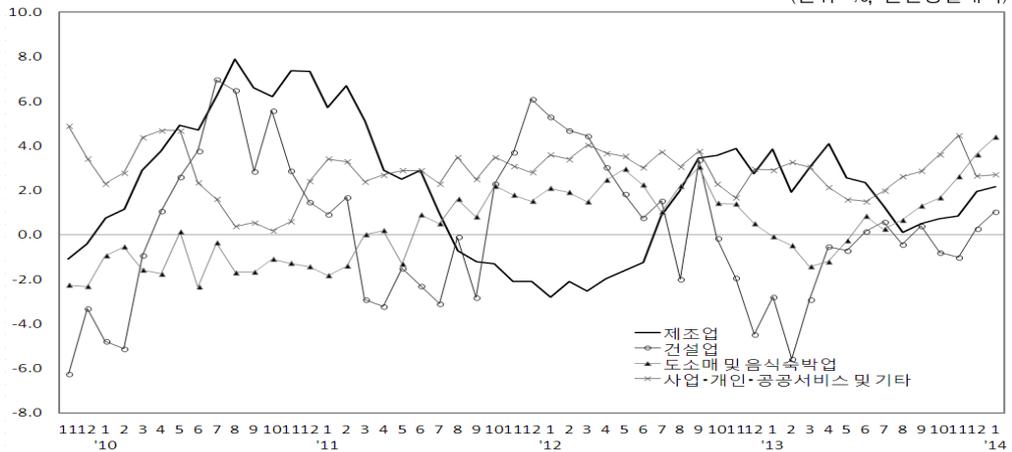
2)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.

3)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, 부동산 및 임대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,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.

자료 : 통계청(2014. 2), 『2014년 1월 고용동향』.

[그림 6]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
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KOSI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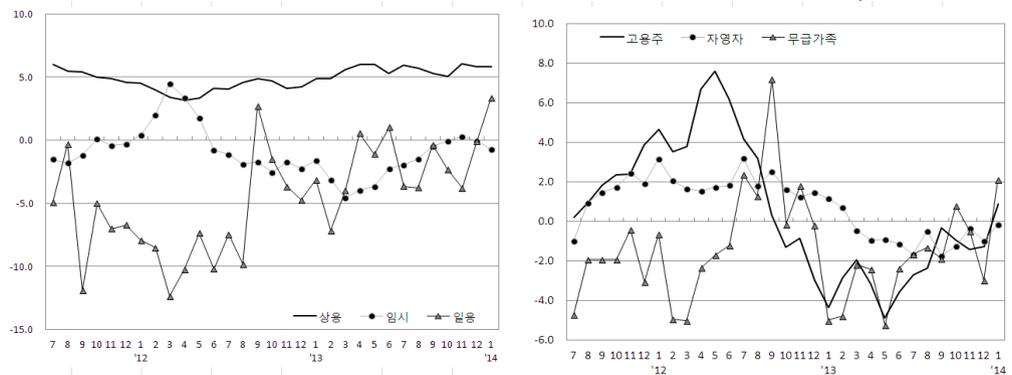
◆ 상용직 증가폭 확대

○ 2014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,5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 명(0.5%) 증가하였고, 임금근로자는 18,2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5천 명(3.8%) 증가하였음.
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,952천 명으로 660천 명(5.8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4,757천 명으로 35천 명(-0.7%) 감소하였고, 일용근로자는 1,548천 명으로 50천 명(3.4%) 증가하였음.
-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(그림 7 좌측 참조).

[그림 7] 임금근로자(좌) 및 비임금근로자(우) 증가율
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)



주 :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,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.

자료 : 통계청, KOSIS.

- 2014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,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,5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천 명(5.9%),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,5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2천 명(2.4%) 증가함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, %)

	2012		2013				2014	
	4/4분기	1/4분기	1월		2/4분기	3/4분기	1/4분기	
			1월	12월			1월	
전 체	24,804 ( 1.4)	24,184 ( 1.1)	24,054 ( 1.4)	25,326 ( 1.3)	25,410 ( 1.7)	25,346 ( 2.2)	24,962 ( 2.3)	24,759 ( 2.9)
비임금근로자	6,917 ( 0.6)	6,578 (-1.1)	6,473 (-1.1)	7,006 (-2.1)	7,049 (-1.5)	6,854 (-0.9)	6,548 (-1.4)	6,503 ( 0.5)
자영업주	5,672 ( 0.6)	5,520 (-0.5)	5,452 (-0.4)	5,726 (-1.8)	5,740 (-1.4)	5,618 (-0.9)	5,474 (-1.1)	5,460 ( 0.1)
무급가족종사자	1,245 ( 0.5)	1,059 (-3.9)	1,021 (-5.0)	1,280 (-3.4)	1,309 (-1.6)	1,236 (-0.8)	1,074 (-3.0)	1,043 ( 2.1)
임금근로자	17,887 ( 1.7)	17,606 ( 1.9)	17,581 ( 2.3)	18,320 ( 2.6)	18,361 ( 2.9)	18,492 ( 3.4)	18,414 ( 3.7)	18,256 ( 3.8)
상용근로자	11,288 ( 4.3)	11,379 ( 5.1)	11,292 ( 4.9)	11,697 ( 5.8)	11,848 ( 5.6)	11,925 ( 5.6)	11,938 ( 5.8)	11,952 ( 5.8)
임시근로자	4,933 (-2.2)	4,762 (-3.1)	4,791 (-1.6)	4,945 (-3.3)	4,928 (-1.3)	4,935 ( 0.0)	4,871 (-0.1)	4,757 (-0.7)
일용근로자	1,666 (-3.3)	1,465 (-4.8)	1,498 (-3.1)	1,678 ( 0.2)	1,585 (-2.6)	1,631 (-2.1)	1,605 (-0.1)	1,548 ( 3.4)
36시간 미만	3,219 ( 0.0)	5,563 (67.9)	3,371 ( 3.4)	4,821 (46.8)	5,083 ( 7.6)	3,395 ( 5.5)	3,515 ( 5.7)	3,568 ( 5.9)
36시간 이상	21,271 ( 1.6)	18,099 (-9.9)	20,035 ( 1.5)	20,217 (-5.6)	19,810 ( 0.2)	21,636 ( 1.7)	21,112 ( 1.8)	20,517 ( 2.4)

주 : ( )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  
 자료 : 통계청(2014. 2), 『2014년 1월 고용동향』.

◆ 대졸 이상 실업률 하락

- 2014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, 50대 연령대에서 감소함.
  - 2014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대(2.6%, -0.7%p), 50대(2.0%, -0.2%p)에서 하락하였고,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함.
  -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(3.8%)와 고졸(4.2%)에서는 각각 0.5%p씩 상승한 반면, 대졸 이상(2.7%, -0.5%p)에서 하락하였음.

〈표 5〉 연령별·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

(단위: 천 명, %)

	2012	2013						2014
	4/4분기	1/4분기					12월	1/4분기
			1월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	
전 체	722 ( 2.8)	907 ( 3.6)	847 ( 3.4)	812 ( 3.1)	777 ( 3.0)	733 ( 2.8)	774 ( 3.0)	891 ( 3.5)
15~29세	284 ( 7.0)	343 ( 8.4)	311 ( 7.5)	325 ( 7.9)	328 ( 7.9)	328 ( 7.9)	355 ( 8.5)	372 ( 8.7)
30~39세	162 ( 2.7)	195 ( 3.3)	193 ( 3.3)	180 ( 3.0)	170 ( 2.9)	155 ( 2.6)	158 ( 2.7)	150 ( 2.6)
40~49세	122 ( 1.8)	143 ( 2.1)	131 ( 2.0)	146 ( 2.1)	131 ( 1.9)	114 ( 1.7)	119 ( 1.8)	133 ( 2.0)
50~59세	102 ( 1.8)	127 ( 2.3)	119 ( 2.2)	106 ( 1.8)	106 ( 1.8)	88 ( 1.5)	87 ( 1.5)	113 ( 2.0)
60세 이상	52 ( 1.6)	99 ( 3.4)	93 ( 3.3)	56 ( 1.6)	42 ( 1.2)	48 ( 1.4)	54 ( 1.7)	122 ( 4.0)
중졸 이하	98 ( 2.0)	148 ( 3.3)	148 ( 3.3)	101 ( 2.0)	86 ( 1.8)	84 ( 1.8)	104 ( 2.4)	164 ( 3.8)
고졸	321 ( 3.2)	367 ( 3.7)	369 ( 3.7)	341 ( 3.3)	345 ( 3.4)	335 ( 3.3)	366 ( 3.6)	431 ( 4.2)
대졸 이상	303 ( 2.9)	392 ( 3.7)	331 ( 3.2)	370 ( 3.4)	346 ( 3.1)	313 ( 2.8)	304 ( 2.8)	297 ( 2.7)
취업무경험 실업자	39	61	49	48	54	49	57	76
취업유경험 실업자	683	845	798	764	723	684	717	815

주: ( )안의 수치는 실업률.  
 자료: 통계청(2014. 2), 『2014년 1월 고용동향』.

○ 2014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89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,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하였고,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15천 명으로 17천 명 증가하였음.

(배기준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

##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### ◆ 2013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.6% 상승

○ 2013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,83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(2,733천 원) 3.6% 상승함.

－ 2013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, 초과급여,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.6% 상승한 3,003천 원을 기록함.

－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.6% 상승해 2,560천 원을 기록하였고,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.4% 상승하여 182천 원 증가하였고,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하여 261천 원을 기록함.

※ 초과급여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
 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
〈표 6〉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, 2010=100.0)

	2010	2011	2012	2013				
				1~11월 평균	11월	1~11월 평균	11월	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2,816 ( 6.8)	2,844 ( 1.0)	2,995 ( 5.3)	2,951 ( 5.5)	2,733 ( 4.4)	3,070 ( 4.0)	2,831 ( 3.6)	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047 ( 6.4)	3,019 (-0.9)	3,178 ( 5.3)	3,128 ( 5.4)	2,900 ( 4.5)	3,003 ( 3.6)	
	정액급여	2,234 ( 4.5)	2,341 ( 4.8)	2,470 ( 5.5)	2,458 ( 5.5)	2,471 ( 5.0)	2,566 ( 4.4)	2,560 ( 3.6)
	초과급여	196 (12.2)	179 (-8.4)	181 ( 1.0)	181 ( 1.0)	181 ( 1.4)	183 ( 1.4)	182 ( 0.4)
	특별급여	617 (12.3)	498 (-19.3)	527 ( 5.8)	490 ( 6.6)	248 ( 2.2)	502 ( 2.5)	261 ( 5.2)
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	1,056 (-1.6)	1,215 (15.1)	1,293 ( 6.4)	1,284 ( 6.5)	1,302 ( 2.6)	1,375 ( 7.1)	1,314 ( 0.9)	
소비자물가지수	100.0 ( 2.9)	104.0 ( 4.0)	106.3 ( 2.2)	106.2 ( 2.3)	106.5 ( 1.6)	107.5 ( 1.2)	107.8 ( 1.2)	
실질임금증가율	3.8	-2.9	3.1	3.2	2.7	2.8	2.3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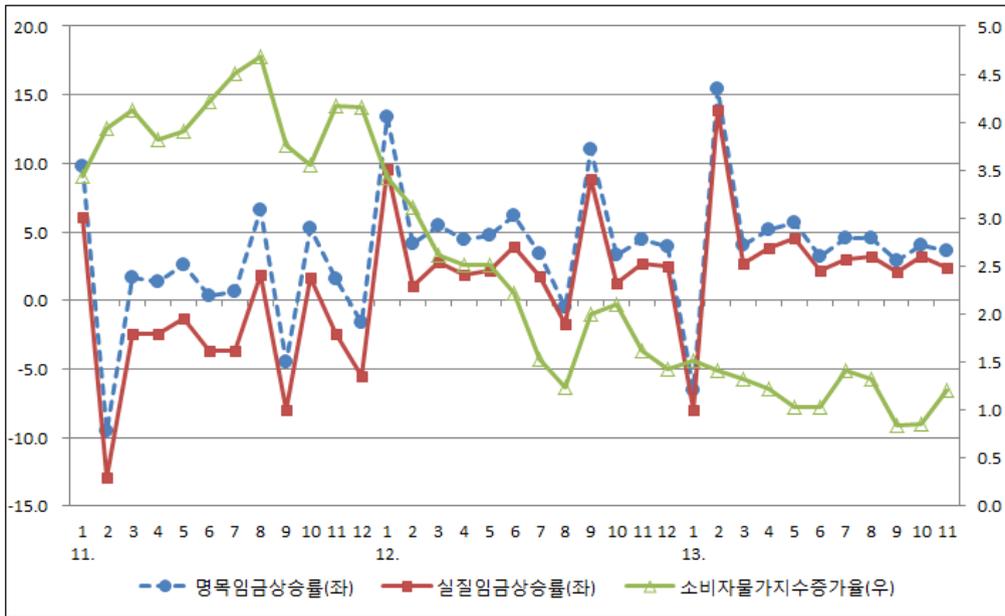
주: 1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2)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/>

[그림 8] 임금상승률 추이

(단위: %, 2010=100.0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임시·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.9% 상승한 1,31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.
- 2013년 1~11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,070천 원으로 전년동평균(2,951천 원)대비 4.0% 상승함.
  -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~11월 평균 대비 4.0% 상승한 3,252천 원을 기록함.
  -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~11월 평균 대비 4.4%, 초과급여는 1.4%, 특별급여는 2.5% 상승함.
  - 임시·일용근로자는 2012년 1~11월 평균 대비 7.1% 상승한 1,375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.
- 2013년 11월 실질임금은 2.3% 상승함.
  -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2010년 기준)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.3% 상승함 (그림 8 참조).
  - 2013년 1~11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~11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2.8% 상승함.

◆ 2013년 11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

- 2013년 11월 기준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.
  - 2013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, 숙박 및 음식점업(6.8%), 제조업(6.1%), 건설업(6.1%), 사업서비스업(5.8%)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, 이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.
  - 반면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(-2.6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-2.2%)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(-2.0%)은 감소함.

〈표 7〉 산업별 임금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	2011	2012	2013			
			1~11월 평균		1~11월 평균	
			11월	11월	11월	11월
전 산업	2,844( 1.0)	2,995( 5.3)	2,951( 5.5)	2,733( 4.4)	3,070( 4.0)	2,831( 3.6)
광업	3,309(10.3)	3,470( 4.9)	3,491( 6.6)	3,434( 6.5)	3,567( 2.2)	3,441( 0.2)
제조업	3,034( 1.6)	3,221( 6.1)	3,157( 6.3)	2,801( 4.7)	3,311( 4.9)	2,971( 6.1)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5,482( 0.5)	5,388(-1.7)	5,102( 0.0)	4,243(-0.3)	5,231( 2.5)	4,382( 3.3)
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	2,488( 1.9)	2,654( 6.7)	2,606( 6.4)	2,562( 5.2)	2,707( 3.9)	2,637( 2.9)
건설업	2,181(12.2)	2,273( 4.2)	2,257( 4.0)	2,181( 5.5)	2,403( 6.4)	2,314( 6.1)
도매 및 소매업	2,942( 6.3)	3,122( 6.1)	3,064( 6.8)	2,881( 7.6)	3,115( 1.7)	2,889( 0.3)
운수업	2,393( 0.5)	2,589( 8.2)	2,559( 8.1)	2,502( 9.1)	2,699( 5.5)	2,518( 0.7)
숙박 및 음식점업	1,653(13.0)	1,738( 5.2)	1,728( 5.3)	1,648( 1.5)	1,761( 1.9)	1,760( 6.8)
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	3,692( 9.1)	3,851( 4.3)	3,823( 4.1)	3,809( 0.9)	3,913( 2.4)	3,711(-2.6)
금융 및 보험업	4,771( 1.9)	4,988( 4.6)	4,922( 4.6)	4,486( 3.2)	4,997( 1.5)	4,549( 1.4)
부동산업 및 임대업	2,017( 2.6)	2,194( 8.8)	2,167( 8.6)	2,071( 5.3)	2,244( 3.6)	2,188( 5.6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3,870(-2.2)	4,112( 6.3)	4,012( 5.7)	3,669( 2.6)	4,153( 3.5)	3,797( 3.5)
사업서비스업	1,700(-8.0)	1,789( 5.3)	1,773( 5.5)	1,760( 5.5)	1,871( 5.5)	1,862( 5.8)
교육서비스업	2,985(-5.4)	3,123( 4.6)	3,125( 4.7)	2,874( 3.7)	3,276( 4.8)	2,951( 2.7)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2,490(-4.0)	2,608( 4.7)	2,590( 5.4)	2,535( 2.4)	2,651( 2.3)	2,478(-2.2)
여가관련 서비스업	2,130( 1.1)	2,211( 3.8)	2,161( 4.4)	2,054( 3.9)	2,287( 5.8)	2,123( 3.4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2,185( 3.9)	2,228( 2.0)	2,206( 1.7)	2,106( 1.5)	2,203(-0.1)	2,064(-2.0)

주: 1)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.  
 2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  
 3) 9차 산업분류 기준.  
 4)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2013년 1~11월 평균 기준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.
  - 2013년 1~11월 평균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건설업(6.4%)이며, 여가관련 서비스업(5.8%), 운수업(5.5%), 사업서비스업(5.5%), 교육서비스업(4.8%), 제조업(4.9%) 등에서도 임금상승이 두드러짐.

◆ 2013년 11월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

- 2013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은 5~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.
  - 2013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5~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,76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.0% 증가하였고, 이는 정액급여(3.7%) 증가의 영향임.
  - 반면,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(-0.7%), 특별급여(-2.0%)는 감소함.

〈표 8〉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·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		2011	2012	2013			
				1~11월 평균		1~11월 평균	
				1~11월 평균	11월	1~11월 평균	11월
전 규모 (5인 이상)	상용임금총액	3,019( -0.9)	3,178( 5.3)	3,128( 5.4)	2,900( 4.5)	3,252( 4.0)	3,003( 3.6)
	정액급여	2,341( 4.8)	2,470( 5.5)	2,458( 5.5)	2,471( 5.0)	2,566( 4.4)	2,560( 3.6)
	초과급여	179( -8.4)	181( 1.0)	181( 1.0)	181( 1.4)	183( 1.4)	182( 0.4)
	특별급여	498(-19.3)	527( 5.8)	490( 6.6)	248( 2.2)	502( 2.5)	261( 5.2)
	비상용임금총액	1,215( 15.1)	1,293( 6.4)	1,284( 6.5)	1,302( 2.6)	1,375( 7.1)	1,314( 0.9)
5~299인	상용임금총액	2,675( -0.9)	2,834( 5.9)	2,797( 6.0)	2,679( 4.8)	2,904( 3.8)	2,760( 3.0)
	정액급여	2,204( 5.9)	2,333( 5.9)	2,323( 5.9)	2,333( 5.1)	2,424( 4.3)	2,418( 3.7)
	초과급여	150(-14.5)	156( 3.5)	155( 3.3)	155( 3.4)	160( 3.1)	153(-0.7)
	특별급여	321(-27.3)	345( 7.7)	319( 8.0)	192( 2.9)	320( 0.4)	188(-2.0)
	비상용임금총액	1,216( 14.8)	1,301( 7.0)	1,292( 7.3)	1,317( 3.5)	1,389( 7.6)	1,324( 0.6)
300인 이상	상용임금총액	4,273( -0.4)	4,424( 3.5)	4,329( 3.7)	3,690( 4.1)	4,491( 3.8)	3,879( 5.1)
	정액급여	2,842( 2.3)	2,965( 4.3)	2,945( 4.2)	2,962( 5.0)	3,074( 4.4)	3,068( 3.6)
	초과급여	286( 6.7)	275(-3.9)	275(-3.7)	277(-1.5)	268(-2.7)	285( 2.7)
	특별급여	1,146( -8.0)	1,185( 3.4)	1,109( 4.4)	451( 2.2)	1,149( 3.6)	525(16.4)
	비상용임금총액	1,208( 17.8)	1,209( 0.1)	1,199(-1.0)	1,160(-6.6)	1,221( 1.9)	1,209( 4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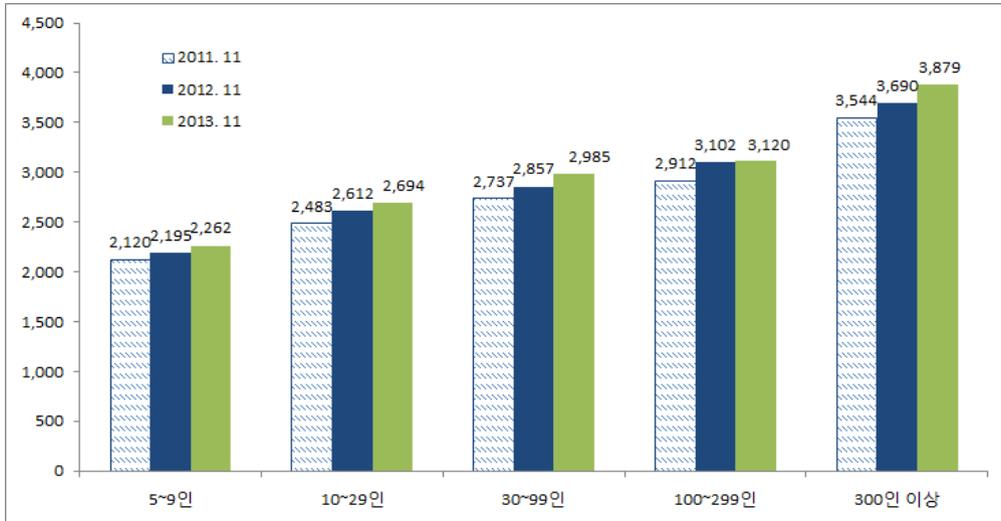
주: 1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2)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(그림 9)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

(단위: 천 원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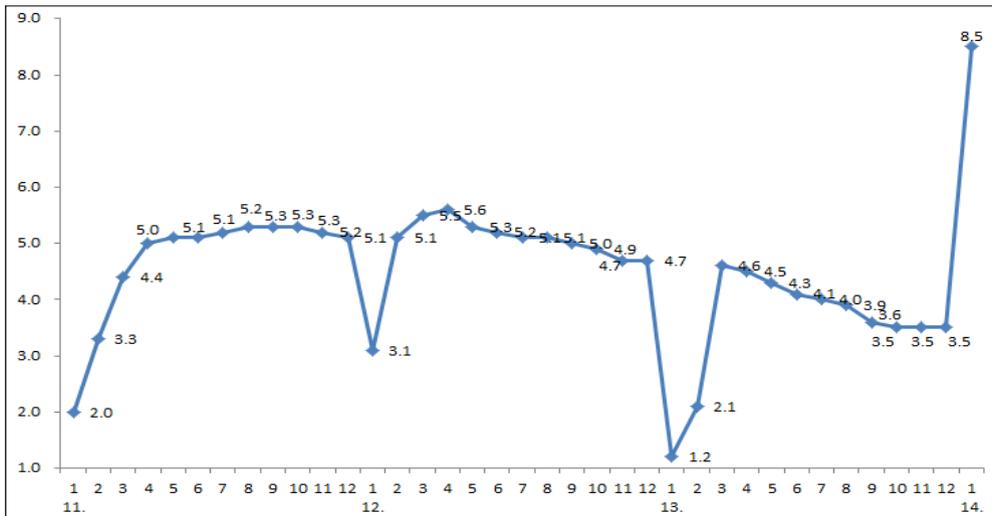
-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3,87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.1% 증가하였고, 이는 정액급여(3.6%), 초과급여(2.7%), 특별급여(16.4%) 모두 상승한 영향임.
- 2013년 1~11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.
  - 상용근로자 5~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(2,904천 원)은 3.8%로 이는 정액급여(4.3%), 초과급여(3.1%), 특별급여(0.4%) 모두 상승한 영향임.
  -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(4,491천 원, 3.8%)은 정액급여(4.4%), 특별급여(3.6%)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, 초과급여(-2.7%)는 하락함.
  - 2013년 1~11월 평균 기준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~299인 규모에서는 7.6%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는 1.9% 증가에 그침.

◆ 2014년 1월 협약임금 인상률 8.5%

- 2014년 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8.5%로 2013년 1월 인상률(1.2%)에 비해 7.3%p 상승함.
  - 임금결정 진도율은 2014년 1월 0.1%로 예년의 수준과 유사함.
  - 각년도 1월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,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.

[그림 10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: %)



주: 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  
 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e-나라지표」, www.index.go.kr

<표 9> 각 연도 1월 협약임금 인상률

(단위: %)

연도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인상률	-0.1	-4.1	3.3	5.8	7.4	5.0	4.4	2.3	2.0	5.2	7.0	0.0	1.8	2.0	3.1	1.2	8.5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e-나라지표」, www.index.go.kr

◆ 2013년 11월 근로시간 3.8% 감소

- 2013년 1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6.9시간(3.8%) 감소함.
  - 2013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(175.4시간)은 전년동월(182.3시간)에 비해 6.9시간(3.8%) 감소함(표 9 참조).
    - ※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11월 대비 1일 적은 영향이 반영됨.
  -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6% 감소하였고,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8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.9% 감소함.
- 2013년 1~11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.5% 감소함.
  - 2013년 1~11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.5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(175.1시간)에 비해 2.6시간(-1.5%) 감소함.

– 2013년 1~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7.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.6% 감소한 반면,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2.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.6% 증가함.

○ 2013년 1~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

- 2013년 1~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1~11월 평균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(그림 11 좌 참조)
-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, 여전히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(그림 11 우 참조).

〈표 10〉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

(단위: 천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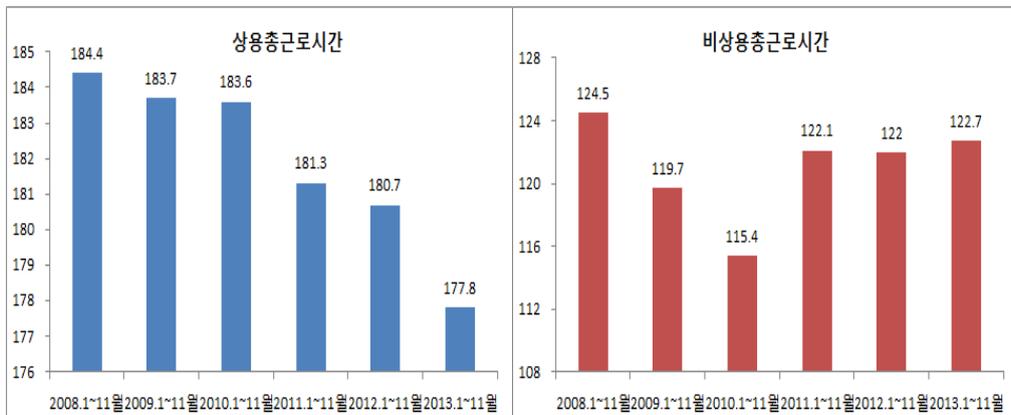
	2011	2012	2013			
			1~11월		1~11월	
			평균	11월	평균	11월
전체 근로시간	176.3(-0.2)	174.3(-1.1)	175.1(-0.3)	182.3(-0.4)	172.5(-1.5)	175.4(-3.8)
상용총근로시간	182.1(-1.4)	179.9(-1.2)	180.7(-0.3)	188.6(-0.8)	177.8(-1.6)	181.9(-3.6)
상용소정실근로시간	168.5( 0.1)	167.2(-0.8)	168.0( 0.2)	176.3(-0.1)	165.4(-1.5)	169.5(-3.9)
상용초과근로시간	13.6(-17.1)	12.8(-5.9)	12.8(-5.9)	12.4(-8.8)	12.4(-3.1)	12.4( 0.0)
비상용근로시간	122.5( 6.2)	122.3(-0.2)	122.0(-0.1)	128.2( 3.8)	122.7( 0.6)	118.1(-7.9)

주: 1)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.  
 2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  
 3)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〈그림 11〉 1~11월 평균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(좌)과 비상용총근로시간(우)

(단위: 시간)



주: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◆ 2013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

- 2013년 11월 근로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.
  - 2013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, 건설업(-5.7%)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-5.1%), 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(-5.0%)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(-5.0%)에서 근로시간이 각각 5%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, 그 외의 산업에서 1~4%가량 감소함.
  - 반면, 숙박 및 음식점업(183.7시간, 0.2%)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.
  - 2013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(191.9시간)이 가장 길었으며, 교육서비스업(151.5시간)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.

〈표 11〉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	2011	2012	2013			
			1~11월 평균		11월	
			1~11월 평균	11월	1~11월 평균	11월
전 산업	176.3(-0.2)	174.3(-1.1)	175.1(-0.3)	182.3(-0.4)	172.5(-1.5)	175.4(-3.8)
광업	186.9(-0.6)	185.3(-0.9)	186.1( 0.1)	189.7(-0.7)	180.3(-3.1)	188.9(-0.4)
제조업	190.6(-0.8)	186.4(-2.2)	187.1(-1.5)	196.2(-1.0)	184.6(-1.3)	190.4(-3.0)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177.1( 0.1)	175.5(-0.9)	176.0(-0.2)	186.0(-0.4)	173.6(-1.4)	177.7(-4.5)
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	186.2(-3.5)	184.8(-0.8)	185.4( 0.1)	191.7(-0.2)	182.0(-1.8)	182.2(-5.0)
건설업	153.9( 5.3)	152.5(-0.9)	152.6(-0.7)	162.4( 4.8)	152.9( 0.2)	153.1(-5.7)
도매 및 소매업	175.1(-1.2)	174.5(-0.3)	175.2( 0.5)	184.2( 0.5)	173.1(-1.2)	177.2(-3.8)
운수업	181.6(-1.6)	181.7( 0.1)	182.4( 0.9)	186.0(-1.5)	177.5(-2.7)	180.0(-3.2)
숙박 및 음식점업	186.2(13.7)	186.6( 0.2)	187.1( 0.9)	183.4(-1.8)	176.8(-5.5)	183.7( 0.2)
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	164.5(-1.0)	163.9(-0.4)	165.0( 0.7)	174.1(-0.1)	162.8(-1.3)	165.5(-4.9)
금융 및 보험업	163.6(-1.0)	163.4(-0.1)	164.6( 1.1)	172.9(-0.5)	162.4(-1.3)	165.9(-4.0)
부동산업 및 임대업	194.2(-3.1)	193.4(-0.4)	194.2( 0.6)	197.6(-1.2)	191.5(-1.4)	191.9(-2.9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66.2(-0.1)	165.3(-0.5)	166.5( 0.7)	176.0(-0.3)	163.8(-1.6)	168.7(-4.1)
사업서비스업	172.1(-4.4)	173.1( 0.6)	174.0( 1.8)	179.6(-1.9)	172.1(-1.1)	176.2(-1.9)
교육서비스업	152.9( 2.0)	151.1(-1.2)	152.4( 0.1)	158.0(-0.9)	150.1(-1.5)	151.5(-4.1)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73.5(-1.7)	174.8( 0.7)	175.5( 1.7)	181.5(-0.7)	172.1(-1.9)	172.3(-5.1)
여가관련 서비스업	157.1(-1.0)	158.1( 0.6)	158.4( 1.1)	163.8( 1.6)	157.9(-0.3)	160.9(-1.8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173.6(-0.2)	168.9(-2.7)	169.4(-2.1)	172.0(-3.3)	167.5(-1.1)	163.4(-5.0)

주: 1)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.  
 2) (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  
 3) 9차 산업분류 기준.  
 4) 1~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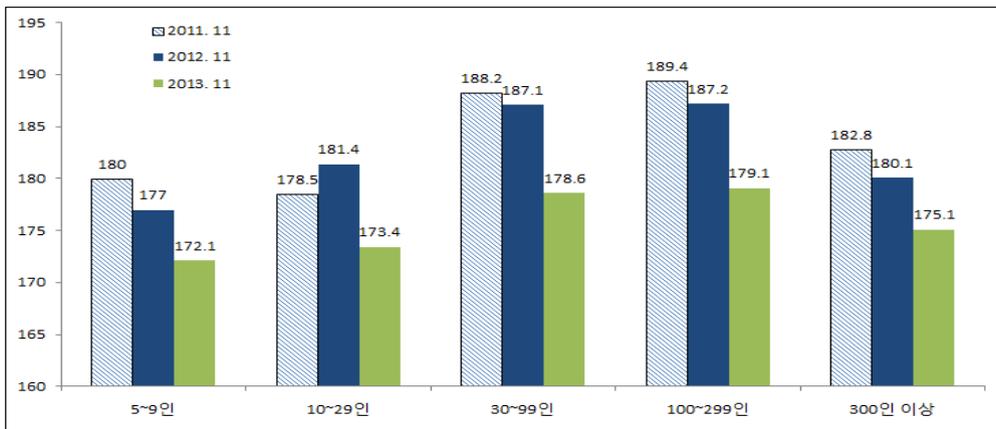
- 2013년 1~11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.
  - 2013년 1~11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176.8시간, -5.5%), 광업(180.3시간, -3.1%), 운수업(177.5 -2.7%), 제조업(184.6시간, -1.3%) 등임.
  - 반면, 건설업(152.9시간, 0.2%)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.

◆ 2013년 11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

- 2013년 1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
  - 세부 규모별로 보면, 상용근로자 5~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.8%, 10~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.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.4%, 30~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.5%, 100~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.3%,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.8% 감소함(그림 12 참조).
- 한편 2013년 1~11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
  - 상용근로자 5~9인 사업체의 2013년 1~11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9.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.8%, 10~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.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.9%, 30~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.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.9%, 100~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.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.7%,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.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.4% 감소함.

[그림 12]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

(단위: 시간)



주: 전체 근로자 기준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(정성미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

##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### 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지난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53건(이월사건 포함 건수)
  - 조정은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,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.
  - 지난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 건수(43건)보다 10건 높은 수치임.
- 지난 1월 조정성립률 58.1%
  - 지난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(70.8%)보다 12.7% 낮아진 수치임.
  - ※ 조정성립률 = (조정성립) / (조정성립 + 조정불성립) × 100

〈표 12〉 2013, 2014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14. 1	53	33	18	6	12	13	0	13	1	1	20	58.1
2013. 1	43	29	17	9	8	7	3	4	1	4	14	70.8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사건통계.

### ◆ 복수노조사건

-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4건(이월사건 포함 건수)
  -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,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,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,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,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.
  -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(16건)보다 8건 높은 수치임.
  -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0%(2건), 기각·각하·취하 비율이 80%(8건)를 차지함.

〈표 13〉 2013, 2014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내역							진행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14. 1	24	10	2	0	0	2	6	0	14
2013. 1	16	7	0	0	1	1	5	0	9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사건통계.

◆ 차별시정사건

- 지난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12건(이월사건 포함 건수)
  - 차별시정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킴.
  - 지난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(36건)보다 24건 감소함.

〈표 14〉 2013, 2014년 1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내역								진행중
		계	전부 시정	일부 시정	기각	각하	조정 성립	중재 결정	취하	
2014. 1	12	2	0	0	1	0	0	0	1	10
2013. 1	36	21	1	4	0	2	8	0	6	15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사건통계.

◆ 민주노총 2.25 국민파업 예고

- 민주노총,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2.25 국민파업을 위한 총력 조직화
  - 민주노총은 국민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과 가맹·산하조직,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에 나섬.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산별-지역-사업장 각급 조직 의결단위 특별회의를 소집하고,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별 파업 조직화를 진행
  - 금속노조, 보건의료노조, 건설산업연맹 등 산별연맹들,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들도 총파업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.
  - 빈민해방실천연대, 빈민련, 전여농 등 단체와 대학생, 상인 일부도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.

◆ 한국노총, 통상임금 관련 공동투쟁위원회 구성

- 통상임금 관련 대응 및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
  - 한국노총은 중앙 및 산별연맹, 업종 및 지역 단위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상임금과 관련한 공동 임단투를 전개할 계획임.
  -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‘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’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거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.
- 한국노총, 올해 임금인상지침으로 총액 대비 8.1% 인상안 제시 전망
  - 한국노총은 올해 개정된 ‘한국노총 표준생계비’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율은 8.1%, 월고정임금 기준으로 25만 1,505원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다고 밝힘.
  -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17.8%를 제시함. 총액으로는 비정규직의 경우도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인 월평균 25만 1,505원 인상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힘.

◆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, 상반기 총파업 예고

-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38개 중점관리기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상반기 총파업을 예고
  -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, ‘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’ 관련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음. 공대위는 공공노련, 공공연맹, 공공운수노조연맹, 금융노조,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이 참여하고 있음.
  - 공대위는 정부가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등 정상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.
  - 언론에 따르면, 공대위는 2월 27일, 304개 공공기관 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동투쟁을 제안할 계획임.
  - 공대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투쟁에도 나설 예정임. 관계자는 “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경영평가를 거부하고, 전면적인 제도혁신 없이는 경영평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”고 언급함.
- 박근혜 대통령,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이면합의 관행 지적
  - 박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“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”이라며 “공공기관 노사

- 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”고 언급함.
-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할 경우 노사 모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합의함.
  - 한편 김현미·설훈·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“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”며 “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자”고 정부·여당에 제안함.

### ◆ 기업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불만

- 경총, 시간제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 발표
  -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4곳을 대상으로 한 ‘시간제 일자리와 일·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’ 결과를 발표함.
  - 기업들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“유·무형의 압력을 느낀다”(29.3%) 혹은 “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”(32.4%)라고 답함.
  - 시간제 일자리 활용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 많은 기업들이 “시간제 채용 계획이 없다”(33.9%), “채용을 검토 중이나 채용 가능성이 낮다”(29.4%)고 답함.
  - 어떤 직무에 시간제를 주로 채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단순노무직(29.1%), 생산·기능(20.6%), 관리·사무(18.6%), 안내·상담(10.9%) 등의 업무를 선택함.
  -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“기존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겠다”(29.6%)는 기업보다는 “신규로 채용하겠다”(70.4%)는 기업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.
  - 또한 기업들은 현재 논의 중인 시간선택제 관련 법적 규제사항 가운데 “전일제 수준의 임금지급”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◆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

- 서울고법은 2월 7일,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림
  - 서울고법 민사2부(조해현 부장판사)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“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회사가 유동성·재무건전성·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가 분명치 않고,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.
  - 언론에 따르면, 쌍용차 사측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금속노조 측 답변 제출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, 2개월 후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될 예정임.

- 노동계와 야당은 회사 측이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하여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함.

#### ◆ 현대자동차지부, 통상임금 소송 주력

- 현대자동차지부가 통상임금 반환 소송과 임금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힘
  -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(지부장 이경훈)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장과 계획을 밝힘.
  - 언론에 따르면, 지부장은 “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승소할 것”이며, “올해 임금교섭 투쟁을 통해 합의서를 보완하고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 등 사측의 일방적 해석을 바로잡아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점을 앞당기겠다”고 언급함.
  - 지부 관계자는 “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동부 지침 폐기투쟁과 법 개정에 앞장설 계획”이라고 밝힘.

#### ◆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

-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(지회장 위영일)가 생활임금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2월 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
  - 2월 4일에는 전국 34개 센터 7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함.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1월에도 전국 29개 센터 600여 명이 기습 파업을 벌인 바 있음.
  - 노조에 따르면, 1월 파업 시 부산·경남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인근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함.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이 명백한 노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한다는 방침임.
  - 지회는 동일업무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% 수준, 헤어관리비, 신발구입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 - 언론에 따르면, 지회 소속 60여 개 분회 중 협력업체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과 교섭을 진행 중인 분회는 50여 곳임.

#### ◆ 철도노조 116억 원 재산가압류 결정

- 서울서부지법, 철도공사(코레일)가 노조를 상대로 낸 116억 원 가압류 신청을 승인
  - 철도노조에 따르면, 서울서부지법은 1월 17일 노조의 부동산(11억 4천만 원)에 대

한 가압류를 승인한 데 이어, 같은 달 22일 예금·채권(104억 8천만 원)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함.

- 코레일은 가압류 신청 외에도 파업기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(152억 원), 파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위자료(10억 원) 등을 청구한 바 있음. 코레일은 조만간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임.
- 노조 관계자는 “코레일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때부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”며 조만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.

#### ◆ 서울시교육청, 학교비정규직 집단해고 논란

-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, 학교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추진 철회를 촉구
  -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(지부장 홍창의)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“문용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전환 기피로 고용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”고 비판함.
  - 지부에 따르면, 서울시교육청은 2월 28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기간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과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힘.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서울지역 전체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200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임.
  - 전문상담사의 경우 작년 100여 명이 해고된 바 있음.
  -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지부의 반발로 중단한 상태임.
  - 언론에 따르면,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할학교에 “전환 재배치 3회 이상 거부시 무기계약자도 계약해지하라”는 공문을 발송함.
  -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“현원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했다”고 전함.

#### ◆ 임신근로자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여부 주목

-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
  -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,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.
  - 법사위는 임신 초기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

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함.

-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.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규정하여,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됨. **KT**

(송민수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